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630

제출연월일: 2020. 5. 28.
제 출 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개정이유

일자리창출, 첨단산업단지, 미래신산업 육성 등의 업무집중을 위한 일자리경제국 신설, 주민만족 향상 및 주민소통 강화를 위한 주민소통과 신설과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 신설 등 행정환경에 부응하는 조직운영을 통해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례 내용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서개편

1) 국 신설: 일자리경제국(안 제3조)

2) 국 명칭변경: 복지경제국 → 복지환경국(안 8조)

3) 과 신설: 주민소통과(안 제7조)

4) 부서 폐지: 청렴감사관

5) 과 명칭변경(안 제6조, 안 제7조)

- 일자리창출실 → 일자리기업과
- 경제산업과 → 경제진흥과
- 회계정보과 → 회계과
- 행정자치과 → 총무과

6) 과 직제변경(안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 (일자리경제국) ① 일자리기업과 ② 경제진흥과 ③ 회계과 ④ 세무1과 ⑤ 세무2과
- (주민자치국) ① 행정자치과 ② 문화관광과 ③ 혁신교육과 ④ 회계정보과 ⑤ 세무1과 ⑥ 세무2과 ⑦ 민원지적과

→ (주민자치국) ① 총무과 ② 주민소통과 ③ 문화관광과 ④ 혁신교육과 ⑤ 교통과 ⑥ 민원지적과

- (복지경제국) ① 주민생활지원과 ② 노인장애인과 ③ 여성가족과 ④ 경제산업과 ⑤ 환경위생과 ⑥ 환경미화과

→ (복지환경국) ① 주민생활지원과 ② 노인장애인과 ③ 여성가족과 ④ 환경위생과 ⑤ 환경미화과

- (안전도시국) ① 안전총괄과 ② 건설과 ③ 도시과 ④ 교통과 ⑤ 건축과 ⑥ 공원녹지과 ⑦ 시설지원과

→ (안전도시국) ① 안전총괄과 ② 건설과 ③ 도시과 ④ 건축과 ⑤ 공원녹지과 ⑥ 시설지원과

나. 분장사무 조정

1) 일자리창출실: 삭제

2) 청렴감사관: 삭제

3) 일자리경제국(안 제6조)

가) 일자리정책, 일자리지원, 기업지원, 사회적경제 등에 관한 사항

나) 경제정책, 전통시장, 농업, 축산업 등에 관한 사항

다) 경리, 계약, 재산관리 등에 관한 사항

라) 세무, 시세, 구세, 과표 등에 관한 사항

마) 지방소득세, 징수, 세외수입관리 등에 관한 사항

바) 도시재생 등에 관한사항 : 삭제

4) 주민자치국(안 제7조)

가) 총무, 인사, 정보관리 등에 관한 사항

나) 주민자치, 구민협력, 청렴감사, 생활민원 등에 관한 사항

다) 문화예술, 문화관광, 문화재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라) 교육정책, 평생교육, 도서정책, 체육지원 및 체육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마) 교통행정, 교통지도, 교통과징 등에 관한 사항

바) 민원1회방문처리제, 가족관계등록, 여권업무, 지적공부관리, 지가조사 및 부동산 관리, 새주소 등에 관한 사항

5) 복지환경국(안 제8조)

가) 복지정책, 희망복지, 통합조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

나) 노인정책, 장애인복지, 생활보장 등에 관한 사항

다) 여성(외국인), 청소년, 보육, 드림스타트 등에 관한 사항

라) 공중위생, 식품위생, 녹색성장 등에 관한 사항

마) 환경보전대책,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등에 관한 사항

바) 경제정책, 산업진흥, 전통시장, 농업, 축산업 등에 관한사항: 삭제

6) 안전도시국(안 제9조)

가) 안전정책 총괄, 재난관리, 통신관제, 재해대책 및 복구지원, 민방위 등에 관한 사항

나) 건설행정, 도로관리, 하천관리, 하수, 오수·분뇨 등에 관한 사항

다) 도시계획의 수립·조정 및 도시 재개발, 도시재생 등에 관한 사항

라) 경관디자인 및 광고물관리, 건축·주택행정, 건축허가관련 복합민원처리 등에 관한 사항

마) 공원관리, 녹지관리, 산림휴양, 정원정책 등에 관한 사항

바) 비기술부서의 공사업무(설계·심사·감독·준공), 문화재·대형 체육시설물 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지시사항

3. 근거법규 : 따로 붙임

가.「지방자치법」제112조 ~ 제120조

나.「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4. 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해당사항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해당사항 없음

다.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여성가족과-20414호, 2020. 5. 20.)

라. 입법예고: 2020. 5. 18. ~ 5. 25. / 의견 없음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20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 및 실장·과장의 직급 등) ①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국장의 직급, 본청·직속기관의 실장·과장 등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과 실장·과장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의 직급, 사업소의 장인 문화의전당 관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구 본청

제3조(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일자리경제국·주민자치국·복지환경국·안전도시국을 둔다.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설치) 부구청장 밑에 기획예산실을 둔다.

제5조(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 행정의 종합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
2. 기구, 정원관리 및 사무배분에 관한 사항
3. 공약, 창의혁신, 지방이양사무, 통계에 관한 사항
4. 예산, 공기업 업무에 관한 사항

5. 구정홍보에 관한 사항

6. 의회업무에 관한 사항

7. 법제, 소송,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제6조(일자리경제국에 두는 과) ① 일자리경제국에 일자리기업과·경제진흥과·회계과·세무1과·세무2과를 둔다.

② 일자리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자리정책, 일자리지원, 기업지원, 사회적경제 등에 관한 사항

2. 경제정책, 전통시장, 농업, 축산업 등에 관한 사항

3. 경리, 계약, 재산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세무, 시세, 구세, 과표 등에 관한 사항

5. 지방소득세, 징수, 세외수입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7조(주민자치국에 두는 과) ① 주민자치국에 총무과·주민소통과·문화관광과·혁신교육과·교통과·민원지적과를 둔다.

② 주민자치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총무, 인사, 정보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 구민협력, 청렴감사, 생활민원 등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문화관광, 문화재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교육정책, 평생교육, 도서정책, 체육지원 및 체육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교통행정, 교통지도, 교통과징 등에 관한 사항

6. 민원1회방문처리제, 가족관계등록, 여권업무, 지적공부관리, 지가조사 및 부동산 관리, 새주소 등에 관한 사항

제8조(복지환경국에 두는 과) ① 복지환경국에 주민생활지원과·노인장애인

과・여성가족과・환경위생과・환경미화과를 둔다.

② 복지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정책, 희망복지, 통합조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노인정책, 장애인복지, 생활보장 등에 관한 사항

3. 여성, 청소년, 보육, 외국인, 드림스타트 등에 관한 사항

4. 공중위생, 식품위생, 녹색성장 등에 관한 사항

5. 환경보전대책,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등에 관한 사항

제9조(안전도시국에 두는 과) ① 안전도시국에 안전총괄과・건설과・도시과・건축과・공원녹지과・시설지원과를 둔다.

② 안전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정책 총괄, 재난관리, 통신관제, 재해대책 및 복구지원, 민방위 등에 관한 사항

2. 건설행정, 도로관리, 하천관리, 하수, 오수・분뇨 등에 관한 사항

3. 도시계획의 수립・조정 및 도시 재개발, 도시재생 등에 관한 사항

4. 경관디자인 및 광고물관리, 건축・주택행정, 건축허가관련 복합민원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공원관리, 녹지관리, 산림휴양, 정원정책 등에 관한 사항

6. 비기술부서의 공사업무(설계, 심사, 감독, 준공), 문화재・대형 체육시설물 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지시사항

제3장 보건소

제10조(설치) ①「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1과 같다.

제11조(소장) ① 보건소에 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2조(소관사무)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제4장 문화의전당

제13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향토문화예술의 진흥과 구민들의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에 문화의전당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의전당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2와 같다.

제14조(관장) ① 문화의전당에 관장을 둔다.
② 관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5조(소관사무) 관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영화·연극·무용·음악 등 공연
2. 지역주민, 단체의 문화예술·체육활동·행사 등의 장소제공
3. 취미·교양·건강교실 운영과 각종 간행물·예술품 등의 전시
4.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특기 및 능력개발
5. 문화의전당 관리 및 운영
6. 그 밖에 문화예술 발전에 관한 사항

제5장 동

제16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 및 제4조의2제1항·제4항에 따라 동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 행정복지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

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직무)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반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맡아서 처리한다.

제18조(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중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복지경제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

②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안전도시국장”을 “주민자치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주민자치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회계정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

③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호 중 “주민자치국장, 복지경제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 주민자치국장,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④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제1호 중 “복지경제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⑤ 울산광역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산업과장”을 “경제진흥과장”으로 한다.

⑥ 울산광역시 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주민자치국장”을 “경제일자리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총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

⑦ 울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 중 “주민자치국장”을 “경제일자리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행정자치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

⑧ 울산광역시 중구 취약계층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경제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경제산업과장”을 “경제진흥과장”으로 한다.

⑨ 울산광역시 중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경제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⑩ 울산광역시 중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복지경제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⑪ 울산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경제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⑫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복지경제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복지경제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⑬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안전도시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경제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⑭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일자리창출실장, 도시과장”을 “도시과장”으로 한다.

⑮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경제산업과”를 “경제진흥과”로 한다.

별표 3 중 “행정자치과”를 “총무과”로 한다.

[별표1]

보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0조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울산광역시중구보건소	울산광역시 중구 외솔큰길 225 (남외동)	울산광역시 중구일원

[별표2]

문화의 전당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3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5	울산광역시 중구일원

근 거 법 규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제113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14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5조(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6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제117조(하부행정기관의 장)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 이 경우 면·동은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면·행정동을 말한다.

제118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임명) ①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이 임명한다.

② 읍장·면장·동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119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시장의, 읍장·면장은 시장이나 군수의, 동장은 시장(구가 없는 시의 시장을 말한다)이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20조(하부행정기구)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에 그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면·동은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면·행정동을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

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4호

: 조례 등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미첨부 사유

○ 조직운영을 위한 국, 과, 팀의 신설, 이동 및 명칭 변경에 따른 분장사무 조정 등에 대해 정비하는 것으로

○ 그 개정 내용이 조문의 뜻을 명확히 밝히기 위한 선언적 형식 등으로 규정된 것으로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므로 별도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3. 작성자

○ 소　속: 기획예산실

○ 직　급: 지방행정주사보

○ 이　름: 권 일 구

○ 연락처: (052)290-3142